

비상경제본부 회의 겸
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
26-11-3
(공개)

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(지방) 기업 지원방안

2026. 4. 24.

관 계 부 처 합 동

1. 기존 조달제도 현황

◇ 현재 수도권권을 포함하여 발주기관 소재지 기준으로 '지역 내 기업'에 대한 우대제도를 운영 중 → '비수도권 기업'을 직접적으로 우대하는 제도는 부재

- (지역제한경쟁) 일정규모 미만 물품제조·용역·공사는 해당 지역소재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(국가·지방계약법령)
 - 최근 공사 분야의 공공기관 지역제한 허용 금액 88억→150억, 지자체는 100억→150억으로 확대하여 지역업체 우대 강화('26.4 시행)
 - * (물품·용역) 국가 2.3억원, 광역지방 3.5억원, 기초지방 5억원미만, (공사) 국가 88억원, 공공지방 150억원
 - 공사의 경우, 해당 지역업체를 일정비율 이상*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도록 의무화하는 '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' 병행 운영
 - * (국가계약) 88억원 미만, 최소참여율 30%, (지방계약) 모든 공사, 최소참여율 40%~49%
- (입찰우대) 공공조달 쏠분야에서 지역기업 참여에 따른 입찰 가점 부여
 - 지역업체이거나(물품·용역 단가계약), 지역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시(물품·용역 총액계약 및 공사) 신인도 가점 부여
 - 최근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(PQ) 및 종합심사에서 지역기업 참여도에 따른 배점/가점 부여('26.4 시행)
 - * (중심제)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(20% → 30%), 지역경제기여도 가점확대(0.8→1.0점)
 - (기술형) 지역업체참여 배점(30%이상시 5점만점)을 기술형입찰 PQ에 신설
- (지역판로) 지방소재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수의계약을 허용하고, 공공조달길잡이*를 통해 지방 초보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
 - * 조달청 본·지방청 인력(36명)을 활용해 중소기업 대상 원스톱 조달 컨설팅 제공('24.3월~)

☞ 수도권-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'지역업체'가 아닌 '비수도권 기업' 지원에 초점을 맞춰 제도개선 추진

☞ 최근 제도개선(「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」^{26.4월 시행})을 한 공사 분야를 제외하고, 물품·용역 분야 대상으로 지방기업 우대방안 마련

2. 물품·용역 분야 비수도권 기업 조달 지원방안

① 비수도권 기업 진입장벽 완화 및 참여기회 확대

◇ 인구감소지역* 등 비수도권 기업 중심으로 ①수의계약 2단계 경쟁 예외 및 ②비수도권 업체 노출 기회 확대를 통해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

* 「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」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지정·고시, 현재 89개 시·군·구 지정

□ (수의계약 확대)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 소액 수의계약 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조달 판로 확보를 집중 지원

①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도 여성·장애인·사회적·청년창업기업과 마찬가지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2천만원→5천만원까지 확대 허용

現	① (일반물품) 2천만원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허용
↓	② (여성·장애인·사회적·청년창업기업) 5천만원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허용
改	②에서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추가 → 인구감소지역의 성장 여건 조성

② 또한,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대상 소액 수의계약은 1억원 미만이라도 조달청에서 구매 대행하여 구매 편의성 제고

* 현재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 1억원 아하는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

□ (쇼핑몰계약 우대) 쇼핑몰(다수공급자계약) 2단계경쟁 구조 개선 및 패스트트랙 도입을 통해 비수도권 기업의 물품공급 기회 확대

① (2단계경쟁 예외허용) 인구감소지역 기업 제품에 대해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*하여 경쟁 예외 범위 확대 및 구매편의 제고

* (예시) 인구감소지역 기업 제품 기준금액 상향 : 기존 5천만 → 개선 1억원(중기간은 1→2억원)

② (비수도권기업 자동추천) 2단계경쟁 제안요청 시 쇼핑몰을 통한 시스템 자동 추천* 대상(2개사)을 비수도권 기업으로 선정

*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요기관에서 5개사 이상 선정 + 시스템 2개사 무작위로 선정

③ (패스트트랙) 쇼핑몰 입점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(MAS)* 체결 시 비수도권 기업을 우선 심사하여 신속성 확보 및 초기 참여 기회 제고

* (계약체결 순서) ①본사(또는 공장) 이전 기업, ②인구감소지역 기업, ③비수도권 기업 순

2 비수도권기업에 대한 입찰 및 평가 우대

◇ 물품·용역의 입·낙찰 평가에 ①지방우대 가점 신설하고 ②동일조건 시 지방기업 우선 구매하여, 비수도권 기업의 수주 기회 확대

- (지방우대 가점 신설) 기존 발주기관 소재지 중심의 지역업체 우대 가점과 별도로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비수도권 기업 입찰 우대 신설
 - (물품·용역 적격심사) 現 지역업체 공동수급체 구성 시 신인도 가점 부여
→ 改 신인도 가점에 비수도권 기업 우대 항목 추가
 - (다수공급자계약(MAS)) 現 선택평가항목에서 지역업체 여부 평가*
→ 改 신인도 가점에 비수도권 기업 우대 항목 신설

* 현 MAS 2단계 경쟁 신인도 가점에는 지역기업 관련 항목 부재

現 (물품·용역 적격심사) 지역업체 공동수급체 구성 시 신인도 가점(0.5~1.0점)
↓
(MAS) 2단계 경쟁 선택평가항목으로 지역업체 여부 평가(최대 7.5점)
改 신인도 가점에 비수도권 기업 우대 항목** 추가·신설

** ①본사(또는 공장) 이전 기업, ②인구감소지역 기업, ③비수도권 기업 순으로 가점 차등 부여하되, 수도권과의 거리를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

- (동일조건 우선구매)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비수도권 기업 제품 우선 사용
 - (물품·용역 적격심사) 동가입찰 및 이행능력심사 결과가 동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기업 및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되도록 변경

現 1순위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
↓
1순위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우선 낙찰 → 2순위비수도권 소재 기업 우선 낙찰
改 → 3순위동일조건 2개사 이상 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

- (다수공급자계약(MAS)) 2단계 경쟁시, 제안가격(가격제안율)이 낮은 기업 보다 인구감소지역 기업 및 비수도권 지역 소재기업을 우선 선정

現 1순위품질관리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자, 2순위제안가격 또는 제안율이 낮은자
↓
1순위품질관리, 2순위인구감소지역기업, 3순위비수도권, 4순위제안가격 또는 제안율

3 비수도권 기업 국내외 판로 지원

◇ 혁신·우수제품 등 주요 조달제도를 통해 비수도권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부터 지역 판로 확보, 해외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

- (혁신·우수제품)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방 혁신제품을 중점 발굴*하고, 인구감소지역 소재기업의 우수제품은 지정기간 연장대상(1년)에 포함**

* 지방정부 추천 산하기관을 혁신 스카우터로 지정하여 지방기업 및 제품을 추천

** 현재 납품실적, 수출실적, 고용률 등을 고려하여 1년 연장중(최대 3년 가능)

- (지역판로) 비수도권 초보기업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*하고, 기존 수도권에 열린 혁신제품 전시회의 지역 개최로 비수도권 기업 참여 확대

* 공공조달관리사 및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등을 활용하여 비수도권에 전담인력 집중

- (해외조달진출)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*(G-PASS) 지정시 가점 부여 및 지원사업** 대상 선정 시 우선배정 비율 상향(50% → 60%)

* Government-Performance ASSured :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지정하여 해외조달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로, 유효 지정기업(1,512개사) 중 47%(708개사)가 비수도권 기업(26.3월)

** 해외조달시장 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인증·규격 취득, 시제품제작, 벤더등록 등에 필요한 서비스 비용을 기업별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 중

IV. 향후 계획

- (규정 정비 및 시행) 재경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조달청 훈령·지침 개정('26.下)

- (추가 대책) 지방시대 대전환을 뒷받침할 법체계*를 구축하고, 과감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정책 도입 방안을 마련

* 「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안('24.12월, 의원 입법 既 발의)」 보완·수정안 마련 및 국가계약법 및 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업 우대 근거 및 구체적인 정책 설계

- 시장 민감도를 감안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숙의 과정을 거쳐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, 입법 및 제도화 추진